라이나생명
A Chubb Company

무배당 간편고지암생존지원특약(미세잔존암 WGS 검사지원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갱신형)

약관

목차

시각화된 약관 요약내용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3
주요 민원 사항 6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7
제 1 조【목적】 7
제 2 조【용어의 정의】 7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8
제 3 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8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8
제 5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9
제 6 조【보험금 등의 청구】 9
제 7 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9
제 3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0
제 8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10
제 9 조【특약의 무효】 11
제 10 조【특약내용의 변경】 11
제 11 조【특약의 보험기간】 11
제 12 조【특약의 갱신】 11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12
제 13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12
제 14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12
제 15 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2
제 5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13
제 16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13
제 17 조【해약환급금】 13
제 6 관 현물급부 지급에 관한 사항 13
제 18 조【"미세잔존암 WGS 검사"의 정의 및 구성】 13
제 19 조【"미세잔존암 WGS 검사"의 제공, 지급절차 및 안내 등】 13
제 7 관 기타사항 등 14
제 20 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14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5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5
(별표 3)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16
(별표 4) 미세잔존암 WGS 검사 세부내용 17

1. 상품명칭 등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상품명칭: 무배당 간편고지암생존지원특약(미세잔존암 WGS 검사지원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갱신형)

- **무배당**은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을 말합니다.
- **암생존지원특약**은 피보험자의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미세잔존암WGS검사지원형**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현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미세잔존암 WGS검사"를 현물급부로 지급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해지율을 적용한 상품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 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일반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갱신형**은 보험계약 **갱신 시**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 유의사항

주의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 유의사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기간

면책기간
보험금 미지급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담보명	면책기간
암생존지원금 (미세잔존암 WGS 검사 현물급부)	가입 후 **90 일간** 보장 제외

※ 갱신계약은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 보장한도

보장한도
보험금
지급한도적용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담보명	보장한도
암생존지원금 (미세잔존암 WGS 검사 현물급부)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10 년간, **매년 1 회한도(최대 10 회)**로 지급

☑ 기타 유의사항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그 진단 확정된 날(이하 "최초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을 최초로 하여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에 생존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암생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생존지원금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매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암생존지원금 대신 **현물("미세잔존암 WGS검사")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암생존지원금을 대신하여 "미세잔존암 WGS검사"를 현물급부로 지급합니다.** 이 때,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약관 제19조("미세잔존암 WGS검사"의 제공, 지급절차 및 안내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세잔존암 WGS검사"의 내용, 이용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암생존지원금 대신** 보험금을 **현물("미세잔존암 WGS검사")로 지급받는 경우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며, 현물("미세잔존암 WGS검사")의 사용대상도 피보험자로 한정됩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0원

주의

①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②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기본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기간 중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계약자는 제 3 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기 전에는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 이 특약은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입니다.



주의

갱신형 계약은 **갱신할 때마다**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보장성보험



주의

① 이 보험은 질병에 대한 위험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주의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 인당 "1 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 인당 "1 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간편심사보험



주의

① 이 보험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소비자**가 간단한 심사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② **일반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심사(3.10.5)형 및 간편심사(3.10.5.5)형의 경우 일반심사보험 대비 계약전 알릴의무를 일부 강화한 항목이 있어 일부 담보에서는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현물급부 지원 관련 불만

내용	평소 암보험 가입을 원했던 A 고객은 라이나생명 모집인으로부터 무배당간편고지암생존지원특약(미세잔존암 WGS 검사지원형)의 가입을 권유 받고 보험에 가입함. A 고객은 가입과정에서 보험금을 현물("미세잔존암 WGS 검사")로 수령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지급되는 "미세잔존암 WGS 검사" 현물 교환권은 피보험자인 A 고객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받음. 보장금액 등 중요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받고,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꼭 참고해 달라는 설명도 받음. 가입 후 3 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A 고객은 '위'에 위치한 종양이 발견되어 주치의의 암(악성신생물)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현물("미세잔존암 WGS 검사")로 지급받기로 선택하고 "미세잔존암 WGS 검사" 현물 교환권을 수령함. 이후 A 고객은 본인에게 "미세잔존암 WGS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현물 교환권을 지인 B 씨에게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미세잔존암 WGS 검사" 현물 교환권으로 B 씨의 "미세잔존암 WGS 검사"가 불가능하여 불만을 갖고 민원을 제기함.
주의	현물급부로 지급된 "미세잔존암WGS검사" 현물 교환권은 해당 교환권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미세잔존암WGS검사" 현물 교환권 수령 후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미세잔존암WGS검사" 현물 교환권을 반납하고 암생존지원금으로의 교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약관 내용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간편고지암생존지원특약(미세잔존암WGS검사지원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갱신형)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되어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 【일부 보장 제외】
>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

> 【보험금 삭감】
>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 【보험료 할증】
>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여 위험정도에 따라 해당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 금액
> - 1년차 이자 = 100원(원금) × 10% = 10원
> - 2년차 이자 = (100원(원금) + 10원(1년차 이자)) × 10% = 11원
>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 및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3[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과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기준】

·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는 진단확정일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확정일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제13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진단 확정된 날(이하 "최초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을 최초로 하여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에 생존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암생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생존지원금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매년 1회를 한도로 지급(지급횟수 기준 최대 10회)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미세잔존암 WGS검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암생존지원금을 대신하여 제18조("미세잔존암 WGS검사"의 정의 및 구성)에서 정한 "미세잔존암 WGS검사"를 현물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현물급부를 지급한 경우 암생존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에서 제1항의 암생존지원금 또는 제2항의 현물("미세잔존암 WGS검사")을 보험금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제13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아 암생존지원금(미세잔존암WGS검사현물급부) 중 최초 진단확정시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2호에 따라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후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 합계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갱신형 계약일 때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금 수령 유형 선택 신청서(회사양식)**
3. **사고증명서(암진단확인서, 사망진단서, 검사결과지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피보험자의 생존 확인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최초 진단확정일 이후에 한함)**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항의 서류 중 보험료 납입면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이 계산합니다. 이 때,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른 "미세잔존암WGS검사(현물급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암생존지원금인 것으로 간주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수익자가 현물급부("미세잔존암 WGS검사") 수령을 선택한 경우 회사는 위 내용과 더불어 현물급부는 보험금가지급제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보험수익자가 현물급부("미세잔존암 WGS검사")수령을 선택한 경우 회사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8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으로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10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음)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 제3항 제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⑤ 제3항 제2호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9조 【특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제13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에서 무효로 된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10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 시 안내한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1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12조【특약의 갱신】

① 제 8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 일전까지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특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 1 항에 따라 갱신계약의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갱신할 때에는 갱신 전 특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100 세 계약해당일 전일로 하며,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갱신 전 특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100 세만기로 갱신됩니다.

④ 제 1 항에서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2.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주계약이 갱신형 계약인 경우에는 주계약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는 경우**
3. **제8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

⑤ 제 1 항에서 제 3 항에 따라 갱신된 특약에 대해서 갱신 전 특약의 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갱신 전 특약의 약관이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약관을 따릅니다.

⑥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 13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3 항 및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⑦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미세잔존암 WGS 검사” (현물급부)에 대한 제휴사의 가격 변동(물가상승 등) 또는 의료기술의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갱신 전 계약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⑧ 갱신계약의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은 갱신일 현재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합니다.

⑨ 제 8 항의 보험요율은 피보험자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의 변동 및 제 7 항에 따른 특약보험가입금액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각 해당 내용을 보험기간 만료일 30 일전까지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제 4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 사유

2. 제 7 항에서 제 9 항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변동 내용

⑪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주계약이 갱신형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이 특약의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⑫ 회사는 제 5 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내용과 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보험기간 만료일 30 일전까지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2 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⑬ 회사는 제 12 항에 따라 갱신할 때에는 계약자의 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문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변경 전 특약은 만료됩니다.

⑭ 회사가 제 13 항에 따라 계약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 90 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3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제8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을 체결할 경우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일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에 따라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정산한 다음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등으로 인해 주계약이 소멸한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8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우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에 계약자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암 미발생자 기준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이 주계약 또는 특약에 의무부가 된 경우, 주계약 또는 특약 해지 시 해지 가능합니다.

제17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보험기간 중 중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습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1.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기본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기간 중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기본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며, “기본형” 상품은 본 상품과 동일한 보장 내용의 비교·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실제 판매하지 않습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현물급부 지급에 관한 사항

제18조【“미세잔존암 WGS검사”의 정의 및 구성】

이 특약에서 “미세잔존암 WGS검사”란 전장 유전체 분석(Whole Genome Sequencing) 기법에 기초하여 암 발생 이후 몸속에 남아 있는 아주 적은 수의 암세포(미세잔존암)를 보다 정밀하게 검출함으로써 암세포의 진행, 재발, 전이 등을 관찰하는 혈액검사를 말하며, 2026년 4월 기준 “미세잔존암 WGS검사”는 별표4(미세잔존암 WGS검사 세부내용)와 같이 구성됩니다.

【전장 유전체 분석(Whole Genome Sequencing)】

생물체의 전체 유전체를 읽어내는 기술로, 인간의 유전체 영역의 100%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유전체 분석 기술입니다. 전체 DNA 서열을 해독해 유전자 변이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유전적 변이 상태에 맞게 행동이 가능하도록 민감도 높은 유전자 변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세잔존암 WGS검사】

“미세잔존암 WGS 검사”는 의료목적의 유전자검사로 의료기관의 검사 의뢰에 따라 실시하며, 피보험자의 종양 조직에 대한 전장유전체분석(WGS)을 선행한 후, 미세잔존암 WGS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미세잔존암 WGS 검사는 암 치료 이후 채취한 피보험자의 혈액을 이용하여 혈장 내 순환유리 DNA(cfDNA)를 분리하고, 이를 전장유전체 분석하여 미세잔존암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제19조【“미세잔존암 WGS검사”의 제공, 지급절차 및 안내 등】

① “미세잔존암 WGS검사”는 제휴회사에서 직접 제공하며, 그 제반책임은 제휴회사에 있습니다.

②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미세잔존암 WGS검사” 관련 세부사항은 회사와 제휴회사간 별도로 정한 운영 기준을 따르며, 회사는 “미세잔존암 WGS검사”의 제공기준, 이용절차, 제한사항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③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물급부로 “미세잔존암 WGS검사” 교환권을 전자문서 등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고, “미세잔존암 WGS검사”의 내용, 이용방법 등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안내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된 “미세잔존암 WGS검사” 현물 교환권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사용 대상은 피보험자로 한정되고 타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가 불가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이미 제공된 “미세잔존암 WGS 검사” (현물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제공된 “미세잔존암 WGS 검사” 교환권을 반환하고 암생존지원금으로의 교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미세잔존암 WGS검사” 교환권을 지급받은 후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제휴회사에 검사 진행 의사를 밝힌 뒤 검사 예약이 확정된 경우는 교환권이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2. “미세잔존암 WGS검사” 시행 전 피보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⑥ 제 5 항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미사용 “미세잔존암 WGS 검사” 교환권을 회사에 반환하고 암생존지원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1 회의 “미세잔존암 WGS 검사” 교환권에 상응하는 암생존지원금은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기준으로 하고, 교환권의 일부 반환이나 교환은 불가합니다.

⑦ 제 5 항에 따라 “미세잔존암 WGS 검사” 교환권을 회사에 반환하려는 경우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암생존지원금으로의 교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교환신청서(회사양식)
2. 반환하려는 “미세잔존암 WGS검사” 교환권의 일련번호 정보
3.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⑧ 제 5 항부터 제 7 항에 따라 “미세잔존암 WGS 검사” 교환권(현물급부)을 회사에 반환하고 상응하는 암생존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그 교환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해당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진 때로 봅니다.

⑨ 교환된 암생존지원금의 지급절차는 제 7 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⑩ 제 5 항부터 제 9 항에도 불구하고 교환신청서가 접수된 날에 이미 “미세잔존암 WGS 검사” 교환권의 유효기간이 도과되었을 경우에는 “미세잔존암 WGS 검사” 교환권(현물급부)의 반환 및 암생존지원금으로의 교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⑪ 회사는 제휴회사의 파산 등을 원인으로 “미세잔존암 WGS 검사”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 3 의 회사(이하, 이 회사를 “제 3 의 제휴회사”라 합니다)와 새롭게 업무제휴를 체결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미세잔존암 WGS 검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미세잔존암 WGS 검사”의 제공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⑫ 회사가 제11항에 따라 “제3의 제휴회사”를 통해 “미세잔존암 WGS검사”를 보험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1. “미세잔존암 WGS검사” 변경 사유
2. “미세잔존암 WGS검사”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
3. 기타 변경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⑬ “미세잔존암 WGS 검사”는 의료환경 등을 포함한 대외환경 변화로 인하여 다른 현물로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암생존지원금보다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현물로 대체되는 경우에 회사는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암생존지원금과 현물 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현물가액은 회사와 제휴회사 또는 제 3 의 제휴회사간 업무제휴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⑭ 다만, 아래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암생존지원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고 “미세잔존암 WGS 검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회사 또는 제휴회사의 사정으로 “미세잔존암 WGS검사” 제공이 불가한 경우
2.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미세잔존암 WGS검사”로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보험금 청구 시점에 피보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4.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세잔존암 WGS검사” 시행이 불가한 경우
5. “암” 조직의 전장 유전체 분석(Whole Genome Sequencing)의 시행이 불가한 경우(“미세잔존암 WGS검사”는 암 조직의 전장유전체분석(Whole Genome Sequencing)이 선행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가 불가합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20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생존지원금 (미세잔존암 WGS검사 현물급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최초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10년간, 매년 1회한도(지급횟수 기준 최대 10회))	최초 진단확정시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0% (또는 현물(미세잔존암 WGS검사) 2회)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시	매년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또는 현물(미세잔존암 WGS검사) 1회)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10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음)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 암생존지원금(미세잔존암 WGS검사 현물급부)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6.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10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10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암생존지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생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7. 보험수익자가 현물("미세잔존암 WGS검사")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암생존지원금을 대신하여 "미세잔존암 WGS검사"를 현물급부로 지급합니다. 이 때,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약관 제19조("미세잔존암 WGS검사"의 제공, 지급절차 및 안내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세잔존암 WGS검사"의 내용, 이용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최초 암생존지원금 (미세잔존암WGS검사 현물급부) (제4조) 현물급부 반환에 따른 암생존지원금 (제19조 제5항) 계약자적립액 (제8조 제3항)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최초 이외 암생존지원금 (미세잔존암WGS검사 현물급부) (제4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내	평균공시이율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7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암생존지원금(미세잔존암WGS검사 현물급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최종 암생존지원금(미세잔존암WGS검사 현물급부) 지급해당일을 상기의 "보험기간 만기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을 "보험기간 만기일"로 합니다.

2. 최초 이외 암생존지원금(미세잔존암WGS검사 현물급부)은 회사가 매년 진단확정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별표3)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Ⅰ.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 9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 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 -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 - 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 - 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 - 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 - 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 - 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 - 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 - 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 - 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 - 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 - 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8.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는 진단확정일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Ⅱ. 진단확정일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 미세잔존암 WGS검사 세부내용

Ⅰ. 아래 세부사항은 2026년 4월 기준이며, 의료환경 등을 포함한 대외환경 변화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안내합니다.

□미세잔존암 WGS검사

- 미세잔존암 검사의 정의

미세잔존암 검사란 암환자를 대상으로 미세잔존질환(Minimal Residual Disease, 약칭 MRD)을 찾아내는 검사로, 암 치료(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받은 뒤 몸속에 미세하게 남아 있는 소량의 암 흔적을 찾아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몸속에 남아 있는 암세포는 진행, 재발, 전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세잔존암 검사의 원리

미세잔존암 검사는 혈액 속에 떠다니는 암세포 유래 DNA 조각을 분석해 재발 위험을 평가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미세잔존암검사를 통해 미세잔존질환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느냐는 향후 환자의 치료 경과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전장유전체분석(WGS)에 기반한 미세잔존암 검사의 특징

미세잔존암 WGS 검사는 암 치료 중에 종양 조직의 전장유전체(WGS, Whole Genome Sequencing)를 먼저 분석해 환자 고유의 암 DNA 정보를 참조군으로 데이터화 한 뒤, 이후 혈액의 전장유전체(WGS, Whole Genome Sequencing)를 분석하여 이를 추적 검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몇 특정 유전자만 선택해 검사하거나 개인별 소규모 유전자 패널을 따로 제작해 검사하는 일반적 미세잔존암 검사와는 달리, 유전체 영역의 100%를 대상으로 검사하므로 더 많은 기준점을 토대로 암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어 기존 대비 높은 정확도(높은 민감도와 특이도)의 검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미세잔존암 WGS 검사 시 유의사항

미세잔존암 WGS 검사는 치료 중 암 조직의 전장유전체(WGS, Whole Genome Sequencing) 정보와 치료 후 혈액의 전장유전체(WGS, Whole Genome Sequencing) 정보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미세잔존암 WGS 검사 시행 이전에 암 조

직의 전장 유전체 분석(Whole Genome Sequencing)이 선행되지 아니한 경우 미세잔존암 WGS 검사가 불가합니다..

- **미세잔존암 WGS 검사의 제공**

미세잔존암 WGS 검사는 바이오테크 회사인 Inocras Inc.(이노크라스)와 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합니다.